

특례법에 삽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특례법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의 통설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법률상의 처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8조(강제추행)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아내에 대한 강간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와 같은 개정안의 규정에 의하여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정폭력특례법은 형법 및 특별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중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같은 경미한 제재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규정은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개정안처럼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아내강간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해석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필요하다면 아내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은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2조 제1호에서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이 많은 경우에 아내구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강간이나 친족간의 강간과는 범죄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가정 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을 가정폭력의 일

환으로 규정한다면 유독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만을 별도로 가정폭력범죄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셋째, 개정안은 아내강간과 강제추행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과 동시에 단서조항으로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그 취지가 아내강간을 가정폭력범죄로 취급하여 특례법의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정안의 입법은 특례법의 기본성격과 어울리지 않으며 불필요하기도 하다. 개정안의 이 규정이 아내강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확보하자는 취지라면 앞서 설명한대로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이 아니라 형법 내지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2) 성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사건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

별도의 입법이든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건 간에 일단 아내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분명하다. 일단 아내강간이 처벌된다는 전제에서, 아내강간과 강제추행 - 더 넓게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성폭력 - 을 “가정폭력범죄”로 흡수하여 가정폭력특례법의 틀에서 다룰 것인가를 진지하게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성폭력특별법이 친족에 의한 강간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에 제정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아내강간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를 동범이 규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에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행위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정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이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의 역할분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제안

성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나의 생각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오로지 보호처분이라는 경미한 제재를 강구하는데 불과한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의 기본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된다면, 특별법이 규정하는 피해자보호조치들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의 피해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추가(개정안 제2조 제3호 바목)

현행 특별법이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에서 오로지 제

321조(주거 및 신체수색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정안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거하거나 피해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의 해당행위를 굳이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며, 동의한다.

3. 피해자 개념에 부양아동 추가(개정안 제2조 제5호)

(1)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를 직접적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아내구타가 일어나는 경우 아동학대가 수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아내구타의 현장을 지켜 본 자녀들이 그로 인해 받는 정신적, 심리적 상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위기개입과정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구성원의 보호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 필요한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⁸⁾ 따라서 특별법이 규정하는 피해자보호조치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에 “가정

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45면.

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 받는 아동”으로 피해자범위를 정의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굳이 “부양아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위기개입과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기본방향이 타당하다면, 이를 아동으로 한정하여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이와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 정도로 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2) 문제점 보완 필요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례법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서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례법은 “피해자” 개념을 여러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례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피해자개념은 특례법이 사용하는 피해자라는 용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례법 제33조 피해자진술권의 행사주체로서 피해자, 제29조 3항 임시조치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규정, 제37조 3항 불처분 결정의 피해자에 대한 통지규정, 제56조 배상명령청구권의 주체로서 피해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특례법 제33조의 피해자진술권 규정은 헌법 제27조 5항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그 해석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례법 제56조 피해자의 배상명령청구권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주체는 직접 피해자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개정안처럼 제2조의 개념 정의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자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게 되면, 이들 규정의 피해자 개념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IV.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개편

1. 응급조치에 현행범체포 추가(개정안 제5조 제1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 관하여 제1호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서의 체포 및 범죄수사”로 규정하여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으로서의 체포”를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현재의 관행처럼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현행범으로 처리되지도 않아서 역설적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경찰관 복귀 후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체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개입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된다.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수사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의 체포는 지금도 가능한 것이지만,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이 초기수사에서 체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 체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초기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

의 분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 실제 가정에서 누구를 분리해 내느냐가 중요한데, 특례법 제5조 제1호는 “분리”라는 중립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호가 피해자의 보호시설인도를, 제3호가 피해자의 의료기관인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개입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주로 “피해자를 분리해 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정작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해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체계는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모는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경찰의 초기개입시 현행범체포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다만 현행 특례법 제5조 - 개정안 제5조도 마찬가지로 - 는 경찰의 수사개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혼동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려는 실무경향과 결합하면서 응급조치 중 범죄수사와 현행범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왕에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개입을 강조하려면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개정제안> 제5조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의 체포 등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범죄사건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에 대한 주거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및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후 절차 등에 대한 고지

2. 임시조치와 보호조치의 근본적인 개편필요성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임시조치의 내용(개정안 제29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제1호에서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를 삭제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주거에 있으면서 단지 방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도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제1호 임시조치를 주거퇴거명령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임시조치 제2호에 대하여 개정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학교, 직장 등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만, 이번 기회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손질했으면 한다. 임시조치 제2호에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장소적·지리적 접근을 봉쇄하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해자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조치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제안> 제29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한 접촉금지. 단, 법원은 가정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

2) 임시조치의 신청(개정안 제8조, 제29조)

현행 특례법 제8조는 임시조치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한정하고 청구요건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피해자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 제8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제5조에 따라 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임시조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제1호와 제2호)를 법원에 신청 - 용어는 “청구”가 더 적합하다 - 하도록 규정하였다. 초기단계에 경찰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피해자보호의 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이다. 근본적으로 타당하다. 임시조치 제1, 2호 처분은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개정안 제8조 제2항이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제3항이 검사로 하여금 임시조치(제1, 2호)를 24시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3) 임시조치의 기간(제29조 제5항)

개정안 제29조 제5항은 임시조치 제1호(주거퇴거명령)와 제2호(접근금지)의 기간을 “2월, 1회 연장”에서 “본 처분 전까지”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3호(의료기관위탁)와 제4호(유치)의 경우에는 그 인신구속적 성격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1월, 1회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 제1호와 제2호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3, 4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월, 1회 연장”이라는 기간제한 때문에 실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이 임시조치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 처분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용어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보호처분의 확정 혹은 불처분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4) 보호처분의 내용 중 감호위탁(개정안 제40조)

보호처분의 내용에 관련하여 개정안 제40조는 제1호를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라고 개정하고, 제5호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을 “가정폭력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 피해자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감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보호처분 중 제5호 감호위탁은 1999년에 6건, 2000년에 2건이 있었을 뿐, 2001년과 2002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감호위탁을 위한 가해자보호시설이 미비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감호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개정안의 장점이다.

5) 피해자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신청권(개정안 제6조 4, 5항)

개정안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 자신이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결정하도록 개정안 제6조는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례법의 처리구도가 검사선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임시조치와 보호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처럼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게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정안 제6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이 특례법의 전체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오로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특례법은 임시조치의 청구여부도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물론 다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특히 특례법 제16조가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보호처분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처분이 형벌을 대체하는 경미한 제재유형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안 제6조 제4, 5항에 따르면 검사선의주의를 배척한 채로 피해자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이처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가정보호사건에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결정된다면 이 규정은 검사의 공소권과 근본적인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가정보호사건은 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비하여, 특례법 제16조 상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검사의 공소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만약에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한 상태에서 검사가 특례법에 의하여 행위자를 공소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논리적으로는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

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의 이 규정의 취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사건을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검사의 공소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례법에 의하면 보호처분은 일종의 형사제재이며 또한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보호사건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변형된 형태의) 사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소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다면 개정안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쟁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보호처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현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교정처분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시스템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구분하여 이원.병행하는 시스템으로 특례법의 구조를 탈바꿈하는 방안이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피해자의 가정보호사건 청구권을 도입한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을 형사사건화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스스로 강구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검사의 관여없이 직접 법원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추구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근본적인 재편방안 - 피해자보호 명령제도의 도입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통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행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그 내용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조치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임시조치 중 제1호(주거퇴거명령)와 제2호(접근금지)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성질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한 신병확보 차원의 제3, 4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호처분 중 제1호와 제2호는 피해자의 보호에 주안점이 있는 조치인 반면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가해자의 교정에 초점을 둔 조치로 양자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조치들을 임시조치 내지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버린 결과, 가정폭력법제에서 독자적인 위상으로 정립되어야 할 피해자보호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종속” 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현재 특례법상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임시조치라는 이름과 체계부터가 그러하다. 임시조치란 말 그대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행해지는 처분이라는 성격을 내포한다. 둘째, 임시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내지 보호사건처리절차에 종속되어 버린 결과

임시조치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순간 끝나버리게 되는데 법원이 보호처분을 가해자에 대한 교정위주의 처분으로 하게 되면 보호처분 이후의 피해자보호에 역시 공백이 남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의 보호처분의 내역을 보면, 제1호 처분이 부과된 경우는 병과된 경우까지 합쳐 보호처분이 부과된 전체 사건 중 채 10%가 되지 않는다. 2002년의 경우 제2호 처분은 부과된 건수가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중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분리해 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이원적으로 체계화하는 재판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 핵심은 피해자보호조치를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조치(형벌과 보호처분)와 법체계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보호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종속되어 처리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라는 입법취지에 걸맞게 피해자보호조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주체적 입장에서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본체계는 아직 조문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구상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임시조치 제1호와 제2호 및 보호처분 제1호와 제2호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별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내용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한 접촉금지

3.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4. 피해자의 동의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

②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 제6조 제4항의 흡수).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보호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수사착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송치받은 때에도 같다. 또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안 제8조의 흡수 및 수정).

③ 판사는 피해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청구)에 의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부과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미 행해진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앞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저질러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피해자는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로 수사중인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응한 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종결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은 아내강간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

는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⑥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2개월을 기본단위로 하되 상한기간을 별도로 정함이 없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현행 특례법 제63조(제1, 2호 보호처분의 불이행)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⑧ 현행 임시조치 제3, 4호는 그대로 임시조치로 규정하여 임시조치는 그야말로 가정폭력범죄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행위자의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⑨ 보호처분으로는 현행 보호처분 중 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V. 사건처리의 기간제한과 신속성

특례법 제7조가 신속한 처리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8조가 가정법원의 처리기간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 제7조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검찰 송치를 20일 혹은 60일로 명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검사의 수사종결처분도 송치 후 30일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이

지만, 이 규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위반하여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왕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송치기간을 20일보다 단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20일, 법원단계에서 30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임시조치 중 행위자의 의료기관위탁과 유치처분의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VI.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가능성

개정안은 제37조 제1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및 소송계속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에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은 공소제기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데 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재 특례법의 가정보호사건절차에서 볼 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당연히 법원이 불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고소취소의 경우에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 또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화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례법 제37조 제1항을 삭제하게 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를 요한다. 첫째,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특례법 제12조의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이미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을 처음에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검사가 처음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에서는 개정안처럼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가 일단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을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입법취지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국가의 형사사법적 개입을 자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사나 법원이 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인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검사나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처리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범죄의 경중이나 지속성, 재범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의 결정에서 검사나 법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보호사건에도 종합적으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방안은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VIII. 맺음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과 피해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데 있다. 나는 개정안의 큰 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 나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와는 다른 차원에서 -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와 병행하여 - 강구되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은 피해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는 절차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현재의 특례법처럼 보호처분과 형벌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한 채로 다만 형사사법기관이 범

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런대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성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취급하여 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반대한다. 아내강간 등 성폭력은 법정책적으로 형사사건화하는 길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다만 나의 제안처럼 특례법상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으로 행해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특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정책적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783호 일부개정 2002. 12.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

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위반한 죄

차.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를 위반한 죄 [[시행일 2000·7·1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동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관할) ①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11조 (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2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할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송치서)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송) ①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

다.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①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

②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2절 조사·심리

제19조 (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①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 (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인) ①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

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29조 (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④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민간인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제1항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35조 (검증·압수·수색) ①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협조·원조) ①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3.19.]]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행위자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44조 (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제48조 (비용의 부담) ①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49조 (항고) ①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 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③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 (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배상명령) ①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①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 (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 (불복) ①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4조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이하 징역이나 2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487호 신규제정 1997. 12. 31.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7099호 일부개정 2004. 01. 20.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임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0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1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할 때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의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

제15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의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구분	내역	예산	실적	잔액	비고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구분	내역	예산	실적	잔액	비고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참고자료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폭력 피해여성의 설문 응답 분석-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여성의전화에서 총 1-8월간 전국 지부의 상담소를 통해 17,81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은 6,970건으로 39.12%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면접상담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한 내담자는 222명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지 6년이 되었고 전국에 가정폭력상담소가 147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설문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가정폭력을 줄이지 못한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상담은 47.75%가 신체적구타이며 30.18%는 폭언말로 나타나 신체적 폭력외에 언어적 폭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어적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경제적 학대 14.1%, 성적학대 6.31%로 나타났는데 최근 법원에서 아내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중복응답)>

내용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생활비를 요구할 때	남편의 외도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	남편이 술마셨을 때	아내가 말대꾸 할 때	남편의 성적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없이	기타	소계
건수	21	17	15	97	40	8	104	16	318
퍼센트	6.6	5.35	4.72	30.50	12.58	2.52	32.70	5.03	100

<폭력의 핑계>

내용	남편에게 말대꾸 한다	남편을 무시한다	남편의 행동을 간섭한다	살림을 잘하지 못한다	시댁식구에게 잘하지 못한다	자녀교육을 잘하지 못한다	아내가 외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타	소계
건수	80	68	41	20	19	6	26	9	29	298
퍼센트	26.85	22.82	13.76	6.71	6.38	2.01	8.72	3.02	9.73	100

<피해여성이 생각하는 폭력 원인>

내용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성격난폭	주벽	의처증	폭력가정에서 자람	기타	소계
건수	34	24	10	35	11	18	18	8	158
퍼센트	21.52	15.19	6.33	22.15	6.96	11.39	11.39	5.06	100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은 주로 '남편이 술마셨을 때(30.50%)'와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없이(32.70%)'가 나타난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에게 말대꾸한다(26.85%), 남편을 무시(22.82%), 행동을 간섭(13.76%)으로 나타나, 대부분 남편들의 일방적 시각에 의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여성이 보는 폭력의 원인에서 보듯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21.52%)와 성격난폭, 열등감(37.34%)등, 남성의 가부장적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폭력이 근절되기 힘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법의 효력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의식속에서 가정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게 하는 의식변화운동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 이후 지금 까지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원인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이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폭력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폭력의 결과 신체적 상처에 대한 답변(중복응답)>

내용	멍, 타박상	열상	골절, 치아 골절	고막 파열	안구 손상	화상	유산	불구가 되었다	기타	소계
건수	165	59	28	25	12	1	4	1	9	304
퍼센트	54.28	19.41	9.21	8.22	3.95	0.33	1.32	0.33	2.96	100

<폭력의 결과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답변(중복응답)>

내용	불안	초조	우울증	공포	좌절감	모욕감	무기력	보복에 대한 두려움
건수	109	77	75	87	42	83	54	53
퍼센트	15.20	10.74	10.46	12.13	5.86	11.58	7.53	7.39
내용	대인기피증	자신감상실	환상, 환청	정신병초기증상	절망적 상태	기타	소계	
건수	21	50	16	6	33	11	717	
퍼센트	2.93	6.97	2.23	0.84	4.6	1.53	100	

폭력을 당한 결과로 나타나는 상처와 후유증, 구타의 방법등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피해양상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폭력 이후 가지게 되는 공포, 불안등과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34.72%로 나타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 가정폭력 방지법에서는 신고나 고소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안전보다는 형식적인 처리절차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즉시 제지하고 격리하고 가해자를 즉각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타의 내용(중복응답)>

내용	물건을 던진다	떨릴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	뺨을 때린다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협박한다	마구 두들겨판다(목조름포함)
건수	119	116	111	99	78	117
퍼센트	15.16	14.78	14.14	12.61	9.94	14.90
내용	옷을 벗기고 때린다(가두어놓음 포함)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담배불 포함)	기타	소계	
건수	28	83	25	9	785	
퍼센트	3.57	10.57	3.18	1.15	100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31.83%로 마구 두들겨 패거나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에 흉기를 들으면 특수강도로 가중처벌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도 폭력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반드시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타직후 배우자의 태도>

내용	사과하거나 진절함	모른척함	당당하고 위협적임	성관계를 강요함	기타	소계
건수	48	28	82	24	6	188
퍼센트	25.53	14.89	43.62	12.77	3.19	100

폭력과 함께 동반되는 학대에는 정서적인 폭력인 폭언폭설이 40.91%로 위협(보복에 대한)등이 구타와 함께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강제적 성행위가 11.36%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타직후에도 12.77%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가 나타남을 드러내고 있다. 폭력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법적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현재 여성의전화연합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아내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3. 폭력 피해여성의 아동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지원해야

<본인의 구타대상(중복응답)>

내용	자녀	시댁식구	친정식구	이웃	친구	기타	소계
건수	87	20	12	8	11	16	154
퍼센트	56.49	12.99	7.79	5.19	7.14	10.39	100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비단 아내에 대한 폭력뿐만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도 함께 일어난다. 자녀가 구타를 당하는 다른 사람의 비율에서 전체중 56.4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실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는 미흡하여 가정폭력 방지법 상에서 피해자의 규정에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4. 경찰이 가정폭력 대응의 핵심-경찰은 변하지 않았다.

<신고시 경찰의 태도>

내용	집안일이나 잘 해결하라고 하며 돌아갔다.	남편과 나에게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조치를 취하였다.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다.	즉시 출동하지 않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	기타	소계
건수	35	5	29	2	9	80
퍼센트	43.75	6.25	36.25	2.50	11.25	100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50.76%)과 모르는 사람(49.64%)이 절반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특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집안일이나 잘 해결하고 돌아갔다는 의견이 43.75%에 이르러, 경찰의 대응이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의견이 10%나 있으며,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약 32%를 차지하는 등.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것

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가정폭력근절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경찰의 초기수 사에의 적극성과 피해자보호,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폭력당한 후 그 사실을 상의하는 자>

내용	아무하고도 상의하지않는다	자녀와 상의한다	시댁식구와 상의한다	친정식구와 상의한다	친구(이웃)와 상의한다	의사와 상의한다	상담소에 가서 상의한다	기타	소계
건수	37	15	16	38	25	1	11	2	145
퍼센트	25.52	10.34	11.03	26.21	17.24	0.69	7.59	1.38	100

<상의한 상대방의 태도>

내용	폭력을 당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참고 살라고 한다	대항하라고 한다	전문가와 상담 하라고 한다	경찰에 고소 하라고 한다	이혼, 별거를 권한다	기타	소계
건수	3	33	3	9	8	48	5	109
퍼센트	2.75	30.28	2.75	8.26	7.34	44.04	4.59	100

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은 주위사람들과 상의하는 경우가 64.82%나 나타나,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다시한번 필요함이 강조되어야 하며, 상담소에 가서 상의하는 경우는 7.59%로 좀 더 각 상담소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5. 여성의 자립성을 확보해야한다.

<남편에 대한“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

내용	이혼할 의사가 없어서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이 미약하다 생각되어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전과자가 될까봐	남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기타	소계
건수	4	21	2	29	1	9	8	74
퍼센트	5.41	28.38	2.7	39.19	1.35	12.16	10.81	100

남편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44.72%에 달하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이들(39.19%)였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서(28.38%)로 경찰의 피해자보호가 중요하며, 남편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내용	그래도 남편이 좋아서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남편이 불쌍해서	가족이나 친척의만류로	자식을 빼앗길까봐	구타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어서
건수	1	29	4	3	16	20
퍼센트	0.80	23.20	3.20	2.40	12.80	16.00
내용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기타	소계	
건수	15	7	10	20	125	
퍼센트	12.00	5.60	8.00	16.00	100	

상담을 해온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며 74.8%가 이혼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헤어지지 못하는 직접적 이유로는‘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23.20%)로 나타났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서가 12.00%로 나타나 남편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체계적이고 안전한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은 8%에 불과하고 아이 문제가 28.8%로 나타나 피해여성을 지원할 때 아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폭력상황에 대한 설문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와 그 대안을 주로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의 구타가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치부로 인식되고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정폭력을 바라보면서 가족내의 갈등으로 인식하는 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침해이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테러라는 기본인식하에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여성전화로서는 어쩌면 처음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방지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비교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第1章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상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p>	<p>제1조(목적)--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부분 삭제</p> <p>제2조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개정이유</p> <p>가정폭력방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정폭력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법의 목적이 건강가정 가꾸기 위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자 처벌보다는 가정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어 이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0.1.12></p> <p>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p> <p>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p> <p>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p> <p>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3호바 형법 제 2편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 321조(주거신체수색의죄)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개정)</p> <p>다. 형법 제2편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에 대한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단,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p> <p>제5호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받는 아동을 말한다</p> <p>제6호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 중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과 제6조의④⑤항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p>	<p>■ 개정이유</p> <p>1가정폭력의 정의에 성적폭력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처벌되지 못하였던 아내강간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2가정폭력의 범죄 중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의 피해 범위를 넓혔다.</p> <p>3. 가사특별사건으로서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법적 근거를 제12조의 1에 마련함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의 범주"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p> <p>4.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가정보호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하여 심리를 하게 될 경우에만 가정보호사건이 됨을 명시하였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장 가정보호사건</p> <p>제1절 통칙</p> <p>제 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申告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p> <p>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p> <p>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p>	<p>제4조(신고의무등)</p> <p>②항에서 추가</p> <p><u>4.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업법</u></p> <p><u>제14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신설)</u></p>	<p>■ 개정이유</p> <p>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장 즉각적이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익업무 요원들의 신고 의무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119구급대원, 동사무소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가정폭력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방, 보호 차원임을 명확히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입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개정 2002.12.18></p> <p>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p> <p>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p> <p>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p>	<p>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p> <p>1.(개정) <u>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u></p> <p>또는</p> <p><u>준현행범으로서의 체포 및 범죄수사</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개정)<u>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에 대한 주거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및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후 절차 등에 대한 고지</u></p>	<p>■ 개정이유</p> <p>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응급조치중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속한 격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이후 가정폭력의 재발 대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를 고지해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수 있다.</p> <p>2. 현재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개시 및 조서작성권한 등을 종합할 때,112 출동 경찰관이 정식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위 개정안은 출동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상황진술서와 같은 형태의 간단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진술서를 현장에서 되도록 징구하여 수사참고자료로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프로세스를 설명하여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는 것이다. 현재의 관행처럼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현행범으로 처리되지도 않아서 역설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하여 경찰관 복귀후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p> <p>3. 현행 규정대로 운용한 결과 형식적인 임시조치 고지만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실제로 임시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서 임시조치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이용절차를 출동경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취지이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조(가정보호사건에 관한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p> <p>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6조(가정보호사건에 관한특례)</p> <p>④ <u>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법원에 이 법에 의한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u></p> <p>⑤ <u>위 제4항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이 법 제2장 제2,3,4절, 제3장,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u></p>	<p>■ 개정이유</p> <p>1. 가정폭력 사건이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과거 폭력 사실만을 갖고도 피해자의 보호와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자 자신이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건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 조항이다.</p> <p>2. 중복적인 가정보호사건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보호사건의 개시요건을 2원화하는 규정임. 형사사건화하기를 거부하고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되기를 원하는 피해자 집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설안이며, 입법 초기 단계부터 제안되었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해자들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유보된 것이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p> <p>① <u>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면 개정 및 후문 삭제)</u></p> <p>② <u>제1항을 제외한 기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사하여 6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p> <p>③ <u>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최종 처분을 하여야 한다.</u></p>	<p>■ 개정이유</p> <p>1. 현행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 처리 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사건들의 폭주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특별히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 점은 검찰 및 법원에서 동일할 상황이다. 따라서 처리 기간을 의무규정화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직제 개편 및 인원 배치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p> <p>2. 또한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얼마든지 은폐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단 노출된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만일 현재의 법원의 처리 기간과 같이 사건 처리가 될 경우, 더욱이 행위자에 대한 주거퇴거명령 등이 발부되지 않거나 발부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며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강력한 임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 및 행위자 각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제38조(처분의 기간 등)가 정보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기간 등)가 정보보호사건에 대하여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각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3. 경찰이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범죄인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온정주의적이거나 비범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폭력범죄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적어도 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죄질로 구분한다면 가정폭력범죄는 저항할 수 없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강력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p> <p>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p>	<p>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의하여 범죄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임시조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시부터 24시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사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와 필요시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p> <p>② 기타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이를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p> <p>③(개정)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제1항제1호와 필요시 같은항 제2호의 임시조치를 24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 개정이유</p> <p>현행 형사법에 의해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를 경찰 수사단계에서 명시를 하여 신속한 조치가 요구될 때 경찰에서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만큼 경찰에게도 이와 관련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리특례)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동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송치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폭력성 기타 성행 등을 수사하여 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관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수사시 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최대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p>	<p>1. 가정폭력범죄 수사시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를 하든, 형사공판절차에 회부를 하든간에 그 판단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이다. 가정폭력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여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그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p> <p>2. 가정폭력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과 아울러 또 하나의 제도화된 폭력 양상을 보인다는 점 및 발생 장소가 가정 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및 검찰 수사시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시조치를 강력하게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p> <p>3. 이것은 경찰에서 임시조치가 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진행과정에서 폭력재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권발동에 의한 주거퇴거명령신청 등 각종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검사의 송치)①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p>	<p>제 11조 (검사의 송치)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행위자를 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p>	<p>■ 개정이유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 처리시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오면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데 이에 폭력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함을 명시 한 것이다.</p>
<p>제18조(비밀엄수등의의무) ③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p>	<p>제18조(비밀엄수등의의무) ③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재량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두어야 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8조 (보조인) ①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p> <p>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p>제28조 (보조인) ① 생략</p> <p>②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상담소등의 -----(개정)</p> <p>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검사, 제8조제1항의 사법경찰관의 각 청구 또는 피해자의 신청(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사가 최종 기각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및 가정보호사건 심리중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각기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호의 처분을 할 경우 제1호 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개정) 3. 동일 4. 동일 	<p>■ 개정이유</p> <p>보조인 조항에 들어있는 범위에서 호주는 호주제 폐지를 예상하여 제외시켰다.</p> <p>■ 개정이유</p> <p>1호의 조치는 오히려 피해자가 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거로부터의 퇴거조치를 함께 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규정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9조(임시조치)</p> <p>⑤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 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⑧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 1항 제1호와 2호의 조치기간은 본 처분 전까지로 하고 3항과 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항과 4항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p> <p>⑧(개정)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p>	<p>■ 개정이유</p> <p>임시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안전에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이 임시조치의 기간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처분까지 임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만 3항이나 4항의 경우 인신의 구금이므로 제한을 두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9조(임시조치)⑨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⑩ 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p> <p>⑪ 제1항 제3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⑨(신설) 판사는 제8항의 조사관등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이행실태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수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⑩(10항과 동일)</p> <p>⑪(11항과 동일)</p> <p>⑫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9항을 개정)</p> <p>⑬제9항의 조사 결과 임시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신속히 기존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제1항 제4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행위자를 구금하여 제46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신설)</p>	<p>■ 개정이유</p> <p>1. 현재 가정법원이나 가사 재판부를 두고 있는 법원 및 지원의 경우에 가정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 인력이 전무하여 해당 조치 및 처분 발부 후의 집행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행 규정화하여 법원의 법관이 아닌 일반직의 직제를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그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의 권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p> <p>2.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자는 일종의 사법모독죄에 해당하는 반사회법적인 독립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간처분인 가정보호사건으로 그러한 반사회법을 가볍게 다룬다는 것은 입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사법의 권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엄중하게 해당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위반자들은 구속하여 검사송치결정을 하는 것이 사법 실무상 정착될 필요가 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31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p> <p>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p> <p>제 31조의 3(증거보전의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p> <p>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p> <p>제 31조의 4(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p>	<p>■ 개정이유</p> <p>1.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가 수사시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p> <p>2.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진술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물 촬영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3.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p> <p>4.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31조의 5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신설)</p> <p>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p> <p>④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7조 (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p> <p>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p> <p>제43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44조(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37조 (불처분의 결정) ①항 1호 삭제</p> <p>제 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5.가정폭력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개정)</p> <p>제43조(보호처분결정의집행) ①(개정) 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4조(보고와 의견제출등) (개정)법원은 제40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 소속 직원에게 보호처분의 집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 개정이유 제 37조의 1항 1호 삭제는 가정폭력방지법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보호처분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개정이유 1호는 임시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였음. 보호처분의 5호는 피해자의 호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행위자를 같은 공간에 감호위탁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시설로 개정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p> <p>②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8조(비용의 부담) ①(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p> <p>1. 기초생활수급권자</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의 2배이하 인자.</p> <p>②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65조(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 요구서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제65조(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같은 항 제4호의 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 요구서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 개정 이유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게 해태시의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p>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p> <p>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p> <p>제2조(정의)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u>피해를 입은 자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양받는 아동</u>을 말한다(개정)</p> <p>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 (삭제)</p>	<p>제 1조와 제 3조에 서 가정과 관련된 내용 삭제 특히 제 3조는 문제된 건강 가정기본법의 내용 이 그대로 있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⑤여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신설)</p> <p>⑥ 제1항 각호의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처를 주무부서로 하여 다음의 기관에서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 2. 각급 학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신설) 	<p>■ 개정이유</p> <p>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개혁이 중요하다. 가정내 가족구성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및 관련교육은 일반인을 비롯하여 각급 공무원, 교사나 교직원의 연찬회나 직무연수 교육, 반사회등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 교육, 군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다종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별히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성이 매우 강력히 작용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문화행사,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p> <p>2.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실시 근거마련을 위한 조문 수정이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p> <p>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p> <p>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①보호시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 6조 각 호의 업무</p> <p>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일</p> <p>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일</p> <p>4.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 시설에 위탁한 사항</p>	<p>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p> <p>③보호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p> <p>(개정)</p> <p>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①보호시설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p> <p>1. 제 6조 각 호의 업무</p> <p>2. 피해자를 보호하는일</p>	<p>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열어놓았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8조(치료보호)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p> <p>2. 가정폭력피해의 치료</p> <p>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p> <p>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p> <p>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p> <p>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p>	<p>제18조</p> <p>제2항, 제3항</p> <p>제 4항 제 5항 삭제</p>	<p>■ 개정이유</p> <p>현재는 쉼터에 있는 피해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담소의 신청에 의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p> <p>더구나 구상권의 절차도 복잡하여 각 지자체에서 아예 치료보호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치료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p> <p>2004년의 개정으로 쉼터에 있는 피해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했으나 이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처분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두고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구상권 부분은 전면 삭제해야 한다.</p>